

# 속초시 장난감도서관 운영 규정

[시행 2024.01.05]  
(일부개정) 2024.01.05 훈령 제784호

관리책임부서명 : 도서체육센터  
관리책임전화번호 : 033-639-2042

**제1조(목적)** 이 규정은「속초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된 속초시 장난감도서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원가입)** ①「속초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가입대상자는 직접 방문하여 각 호의 절차에 따라 가입한 후 회원증을 발급받아야 이용할 수 있다.

1. 회원가입 대상자는 신분증과 기타 영유아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발급일 3개월 이내)를 제시하여야 한다.

2. 회원가입 대상자는 이 규정을 확인하고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② 회원가입은 영유아 1인 1회원으로 하며, 회원의 자격은 영유아의 연령(6세 미만)에 따라 정해진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6.8., 2024.1.5.>

**제3조(회원의 의무)** ① 회원의 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장난감도서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운영자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회원의 등록정보를 변경하여야 한다.

② 대여자료가 작동되지 않는 경우 대여시간으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장난감도서관으로 전화접수를 하여야 하며, 24시간 이후에 접수된 것에 대해서는 제9조의 변상 규정에 따른다.

③ 탈퇴를 희망하는 회원은 대여자료를 모두 반납한 후 탈퇴하여야 한다.

④ 대여자료는 공동으로 사용되므로 대여기간동안 깨끗하고 청결하게 유지하도록 한다.

⑤ 장난감도서관 출입 시 영유아는 반드시 보호자와 동행해야하며, 회원은 장난감도서관에 보호자 없이 영유아만 두고 나가는 일이 없도록 한다.

**제4조(이용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회원등록을 취소하는 등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

1. 가입 후 속초시가 아닌 타 지역으로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

2. 대여자료를 분실·훼손·파손하고도 변상하지 아니한 경우

3. 타인의 개인정보를 도용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4. 회원증을 도용하거나 양도하여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5. 장난감도서관의 대여서비스 운영을 고의적으로 방해한 경우

6. 그 밖에 이 규정을 준수하지 않거나 이용제한을 할 충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대여신청)** ① 회원은 장난감도서관에 직접 방문하여 대여를 신청할 수 있다.

② 회원은 장난감도서관에서 지정한 대여자료에 대해서만 대여를 신청할 수 있다.

③ 회원은 대여 시 직접 방문을 하여 반드시 회원증과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④ 대리인은 위임받은 보호자로만 제한되며, 대리인에 한해 회원증과 대리인의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한다.

⑤ 대리인의 경우 운영자는 회원에게 유선통화 등의 인증절차를 거칠 수 있다.

**제6조(대여)** ① 장난감 대여기간은 월 3회로 하며 1회에 14일로 한다.

② 장난감 대여수량은 회원당 3점으로 한다.

③ 대여자료 반납 후 4주 이내에 동일한 품목으로 재 대여할 수 없다.

④ 회원은 담당자와 함께 대여자료 구성품의 개수 및 상태, 작동 여부를 확인한 후 대여한다.

⑤ 작동 완구의 경우 소모성 물품(건전지 등)은 대여하지 않는다.

**제7조(반납)** ① 대여자료는 반드시 장난감도서관에 반납하여야 하며 택배 등 배달에 의한 반납은 인정하지 않는다.

② 반납 시 대여자료의 전부를 반납하여야 하며, 일부가 누락되었을 경우 반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③ 대여자료는 회원이 반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대리인이 회원증을 지참한 경우에는 대리반납 할 수 있다.

④ 회원은 운영자와 함께 대여자료의 내용과 청결상태 등을 확인한 후 반납한다.

⑤ 반납일이 휴관일인 경우 다음날로 한다.

**제8조(연체)** 대여자료를 기한 내에 반납하지 않은 경우 연체된 기간만큼 대여가 정지되며, 일부 구성품을 미 반납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만, 90일 이상 연체한 경우에는 분실한 것으로 간주하여 제9조(변상)의 규정에 따라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24.1.5.>

**제9조(변상)** ① 대여자료의 일부를 분실하거나 파손한 경우 회원에게 그 책임을 물 수 있으며, 회원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② 분실·파손한 경우에는 직접 수리하거나 동일제품 또는 유사제품을 구입하여 파손된 일부를 변상하도록 하며, 완료시까지 대여가 정지된다.

③ 수리 및 동일제품 구입이 불가능한 경우 구입기간과 대여횟수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변상하여야 하며, 구입시기와 대여횟수 중 변상률이 적은 규정을 적용한다.

기 준	변상 금액
구입 후 6개월 미만 또는 대여 5회 미만	구매금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장난감
구입 후 6개월 이상 ~ 1년 미만 또는 대여 5회 이상 ~ 20회 미만	구매금액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장난감
구입 후 1년 이상 ~ 2년 미만 또는 대여 20회 이상 ~ 30회 미만	구매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장난감
구입 후 2년 이상 ~ 3년 미만 또는 대여 30회 이상 ~ 40회 미만	구매금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장난감
구입 후 3년 이상 또는 대여 40회 이상	구매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장난감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6.8.)**

이 규정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4.1.5.)**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